

패션기업의 특허 · 실용신안 등록현황에 관한 연구 -IPC분류코드 A41B와 A41D를 중심으로-

김 용 주[†]

한성대학교 패션디자인전공

A Study on the Registration of Patent and Utility Models by Fashion Firms in Korea -Focus on IPC A41B and A41D-

Yongju Kim[†]

Dept. of Fashion Design, Hansung University

접수일(2010년 11월 4일), 수정일(1차 : 2010년 11월 10일, 완료일 : 2010년 11월 12일), 게재확정일(2010년 12월 15일)

Abstract

This study analyzed the registration of patent and utility models by fashion firms in Korea. A total of 2,291 registration cases of IPC A41B-H from the period of 1996 to 2009 were collected by KIPRIS of the Korean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KIPO). All cases were analyzed by year to review the longitudinal trend and 481 cases of IPC A41B (shirts, underwear, baby linen, and handkerchiefs) and 1088 cases of IPC A41D (outerwear, protective garments, and accessories) were analyzed by content (provided benefit type and developing method), by detailed product items and the characteristics of the applicant. The result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1) Registration of IPC 41 increased steeply by the year (especially since 2006) and the patent registrations increased more than those in the utility model. 2) Analyzing the application content of A41B on the basis of benefit showed that 75% were to provide new functions and the rest were for health. In terms of the developing method, 83% of benefit provided by the application were by design development, 11.2% were by material, and the rest was by process. In the cases of IPC A41D, 23.6% were for safety and protection. In terms of the developing method, the process and material development were more frequently adopted than in the cases of A41B. 3) The major product types of A41B were socks, underwear, and infant wear, whereas gloves and parts of clothing were major items in A41D. 4) In terms of the characteristics of the applicant, registration by firms was greater for patents than for utility models and registration by foreigners increased in 2006 due to the complete opening of the retail market. 5) Fifteen universities registered for a total 57 cases and major applications were for IT related clothing or high-tech protective items.

Key words: Patents, Utility model, Intellectual property right, Fashion industry, IPC A41B/A41D; 특허,
실용신안, 지적재산권, 패션산업, IPC A41B/A41D

I. 서 론

[†]Corresponding author

E-mail: yjkim@hansung.ac.kr

본 연구는 2009년 한성대학교 학술연구비 지원과제임.

세계경제환경의 변화로 점차 기업경쟁력의 원천이
과거 노동이나 자본 등의 유형자산에서 정보나 지식
의 창출 · 확산 · 활용 등의 무형자산에 의한 부가가치

창출로 전환되고 있다. 따라서 기업은 이러한 무형자산을 권리화한 지적재산권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게 되었고 이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가 증가하고 있다(특허청, 2010a). 더욱이 각국의 FTA협정이 체결되고 발효되는 등 세계경제시장이 완전 개방화 추세를 보임에 따라 자국시장을 보호하던 과거의 무역장벽을 대신하는 새로운 보호장치로서 지적재산권이 대두되고 있다(원인희, 2009). 이에 따라 선진국의 기업을 중심으로 자국뿐 아니라 세계시장에서 지적재산권을 확보하려는 시도가 오랜 전부터 시도되어 왔다. 우리나라로 세계시장으로의 적극적인 진출을 모색함에 따라 우리나라의 PCT(특허협력조약: Patent Cooperation Treaty) 국제출원은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09년의 경우 8,066건으로 미국, 일본, 독일에 이어 세계 4위를 차지하고 있다(특허청, 2010a).

패션산업도 과거에는 대표적인 노동집약산업으로 생산원가에 근거한 가격경쟁력을 추구하던 제조업이었으나 세계 모든 국가를 생산지로 인식하여 가장 효율적인 방법을 택하는 글로벌 소싱이 가능하게 됨에 따라 경쟁력의 핵심이 마케팅 중심으로 변화되었고 또 패션소비시장이 전 세계로 확대됨에 따라 세계시장에서의 지적재산권이 매우 중요한 자산으로 인식되고 있다. 특히 디지털 환경에서는 각종 정보제공의 속도가 빨라지고 노출 정보량이 급증하여 제품을 무분별하게 복제하거나 모방하는 사례가 증가하는 데 패션산업이 그 대표적인 예라 할 수 있으므로 법제도를 이해하여 이에 대한 권리의 보호가 필요하다고 하겠다(신계옥, 2009).

지적재산권(Intellectual property right)에는 특허(patent), 실용신안(utility model), 상표(trademark), 그리고 디자인/design)을 포함하는 산업체재산권과 창작물에 관한 저작권(copy right), 그리고 신지식재산권이 포함된다. 이에 대한 국제적인 권리보호는 현재 172개국이 가입하고 있는 세계지적재산기구(WIPO: 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에서 담당하고 있다. 국내의 산업체재산권 등록 및 보호는 특허청에서 관리하고 있으며 저작권은 별도의 심사 없이 창작에 대하여 권리를 부여하고 있다. 그 중 패션기업에서 가장 큰 비중을 두고 있고 실제 많은 침해 사례가 발생하는 것은 상표권이며, 상품수명의 급격한 단축화 경향에 따라 법적권리보호에는 소극적이나 빈번한 디자인 모방 등에 의해 관행상 묵시적으로 빈번한 침해가 발생하는 분야는 디자인이다(김용주, 2004a). 현재까지 누적되어 온 지적재산권 등록현황에 따르면 섬유, 의류제품의 상

표권은 9,833건으로 총 상표권 등록의 7.8%이고 디자인은 4,835건으로 8.4%, 특허와 실용신안권 등록은 각각 2,695건과 492건으로 총 특허, 실용신안 건수의 1.6%와 2.9%에 불과하다(특허청, 2010a). 그러나 최근 소비자의 라이프스타일이 변화되고 다양한 기능의 패션제품에 대한 요구가 증가함에 따라 패션기업은 제품기능성에 의한 브랜드 차별화를 모색하게 되었고, 디자인처럼 쉽게 모방이 용이하지 않고 상대적으로 수명이 긴 권리인 특허와 실용신안에 관한 권리를 중요하게 인식하게 되었다.

본 연구는 패션제품에 있어 특허와 실용신안 등록이 본격적으로, 그리고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기 시작한 1996년 이후 2009년까지 등록현황을 양적, 질적으로 분석하여 어떤 변화추세를 보이는지를 파악하여 국내 패션기업의 지적재산권, 특히 특허와 실용신안권의 보호전략수립에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II. 연구배경

1. 패션기업과 지적재산권

패션산업은 제품의 제조와 소비의 측면에서 타 산업과는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어 패션기업은 이에 적합한 지적재산권 관리전략을 개발하게 된다.

우선 제품제조의 측면에서 패션산업의 가장 큰 특징으로 상품수명의 급격한 단축을 들 수 있는데 최근 ZARA와 같은 패스트패션(fast fashion)의 경우 2주마다 신상품이 매장에 입고되고 이러한 상품수명의 단축화는 거의 모든 패션상품군에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것은 생산기술의 발달과 더불어 점점 더 다양해지는 소비자의 기호를 충족시키기 위한 현상으로 기업은 디자인 소량생산방식을 취하게 되어 한 디자인당 생산수량은 매우 적어지고 있다. 우리나라 지적재산권 제도 중 디자인 제도(구 의장제도)는 이러한 패션산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1998년 의복류에는 무심사등록 출원제도를 실시하였고 2001년 개정의장법에는 부분의장제도, 복수의장등록 출원제도, 그리고 비밀의장제도를 시행하여 패션산업의 현실에 맞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신재호, 2004). 그러나 현실적으로 업계에서는 국내외 디자인의 모방이 오래된 관행으로 묵인되고 있고 무심사로 출원기간이 단축되었다라도 실제 판매기간은 그 보다 짧기 때문에 대부분의 패션업체는 이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또

한 디자인권이 침해된 경우에도 유사성의 판단 기준이 모호하고 증거제시가 어려워 적극적인 대응이 어렵고 상표에 비해 등록을 해야 하는 디자인의 수가 매우 많아 출원비용이 비싸다는 점이 디자인권에 대한 소극적인 이유로 밝혀졌다(김용주, 2004a). 소비자의 측면에서도 특정 브랜드의 디자인 모방에 의한 제품이라는 것을 인지하면서도 기꺼이 구매를 하는 잘못된 인식이 패션기업의 디자인권 등록에 대하여 소극적인 원인으로 자리되고 있다. 소수의 사례이나 적극적으로 대응한 사례는 상대적으로 제품의 수명이 긴 생활한복 브랜드인 '질경이우리옷'과 '새울'의 경우 적극적인 법적 대응을 하였으나 그 해결과정은 오랜 시간과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었다(김용주, 2001). 의복류(의장분류 B1)의 디자인 등록을 중심으로 한국의류산업의 디자인 등록추세를 분석한 김용주(2004b)의 연구에 따르면 최초 의장등록일인 1963년 3월 1일부터 2003년 4월 24일까지 디자인 등록 건은 총 1,850건이었고 이중 스웨터 풀로셔츠 등이 12.2%, 언더팬츠, 11.8%, 한복 8.9%로 기대수명이 긴 품목의 비중이 컸다. 무심사제도가 시행된 1998년 3월 1일 이후에는 이러한 현상이 더 두드러져 한복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고 언더팬츠가 두 번째로 비중이 큰 품목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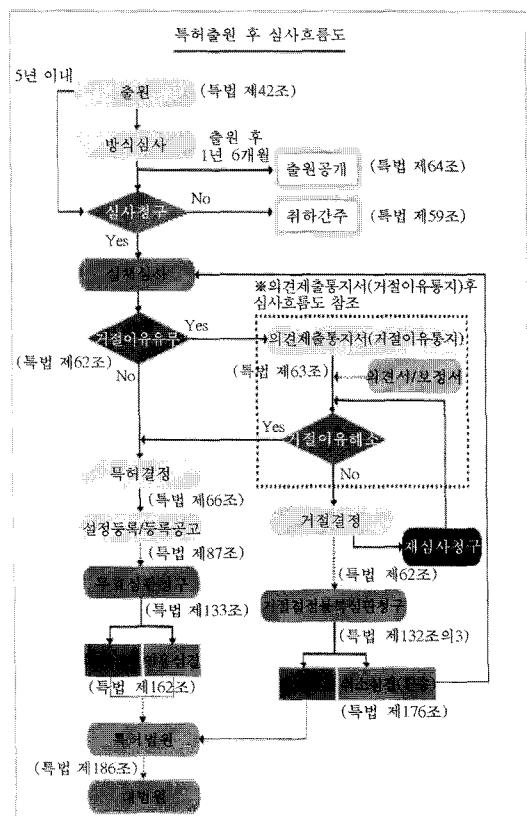
패션산업의 소비 측면에서 두드러지는 특성은 패션상품이 주로 브랜드 위주의 구매가 이루어지고 브랜드의 명성이 제품의 가치와 이를 착용한 소비자의 사회적, 경제적 신분을 상징적으로 나타내주는 경향이 있어 유명 브랜드를 통한 과시적소비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동시에 패션상품의 상표 도용과 디자인 모방이 매우 용이하므로 소비자의 혼돈을 유발하여 부당 이익을 취하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우리나라 특허청에서 그 동안의 상표권 침해 적발실적을 토대로 발간한 『주로 도용되는 국내외 상표집』에는 77개의 상표가 수록되어 있는 데 그 중 73개가 의류, 신발상표였고(특허청, 2003), 관세청의 적발실적에도 핸드백과 의류, 그리고 신발이 26%, 시계류가 70%를 차지해 거의 대부분이 패션상품으로 분석되었다("가짜 유명 상품", 2003). 특히 병행수입이 허용된 이후 소비자에게 Grossman and Shapiro(1988)가 분류한 기만적 위조상품(deceptive counterfeit)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므로 이는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로 야기되고 있고 이는 국제통상의 새로운 분쟁이슈로 대두되고 있다. 특히 최근 서명을 마치고 2011년 7월 발효되는 한·EU FTA를 앞두고 EU는 상표권에 대한

강력한 보호를 요구하고 있는데, 이에는 패션상품의 관련성이 크다고 할 수 있다. 국내 패션기업도 디자인 권리와는 달리 상표권 보호를 위해서는 보다 적극적이다. 실제 패션기업을 대상으로 한 연구(김용주, 2004a)에 의하면 상표권 침해가 빈번히 발생하는 상표의 경우 별도의 부서(예를 들면 법무팀)를 두어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1차적으로는 도용자에 대해 제품폐기, 압류, 사과문 요구 등의 경고를 하고 이로서 해결이 안될 경우 민형사 고발의 강력한 법적 대응을 하며, 의도적인 유사상표 출원을 시도하는 경우 관할부처인 특허청에 상표 무효, 취소소송을 취하고 있었다. 상표 도용이 많은 스포츠웨어의 판결문을 분석한 Kim(2005)의 연구에 따르면 총 65건의 상표 관련 소송에서 30건은 등록거부, 18건은 등록무효, 16건은 등록취소로 총 64건이 원상표를 보호하는 판결이 공표되었고 단 1건만 등록을 허용하였다. 우리나라에서 상표 도용이 가장 많이 시도되고 있는 폴로/랄프로렌 상표의 경우 원상표로 문자상표 35건, 도형상표 38건으로 총 73건이 등록되어 있었으나(김용주, 2003), 특허청에 유사상표 출원이 시도된 건수는 85건을 기록하였다. 이중 72건은 특허청 심사단계에서 거절되었고 3건은 공고 후 등록 거절되었고 10건은 유사상표임에도 등록이 되었다(김용주, 2003). 최근에 발표된 라코스테와 크로커다일레이디의 분쟁에서 라코스테가 대법원에서 승소하였으나 문자와 도형의 상표 조합이 다양하므로 앞으로 크로커다일의 악어 로고의 운명은 불확실하다고 할 수 있다("싱가포르 악어", 2010). 그러나 판결이후 크로커다일레이디의 간판에 악어를 삭제하는 현상을 발견할 수 있다. 이러한 상표의 도용은 국내 시장에서 뿐 아니라 국내 패션브랜드가 해외시장으로 진출할 경우, 시장진입 자체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막대한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사례가 되기도 한다. 중국시장에서 한국패션브랜드가 선등록된 사례는 24건에 달하고 한국기업과 중국기업에 의해 동시에 등록된 사례도 14건을 차지해(김용주, 2006) 패션기업은 글로벌 시장으로의 진출 계획에 앞서 상표권의 확보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2. 특허와 실용신안 제도

특허와 실용신안은 출원절차나 보호대상에 있어 공통점이 있으나 다소 차이점도 있다. 특허는 '발명'에 대하여, 실용신안은 '고안'에 대하여 법적 권리를 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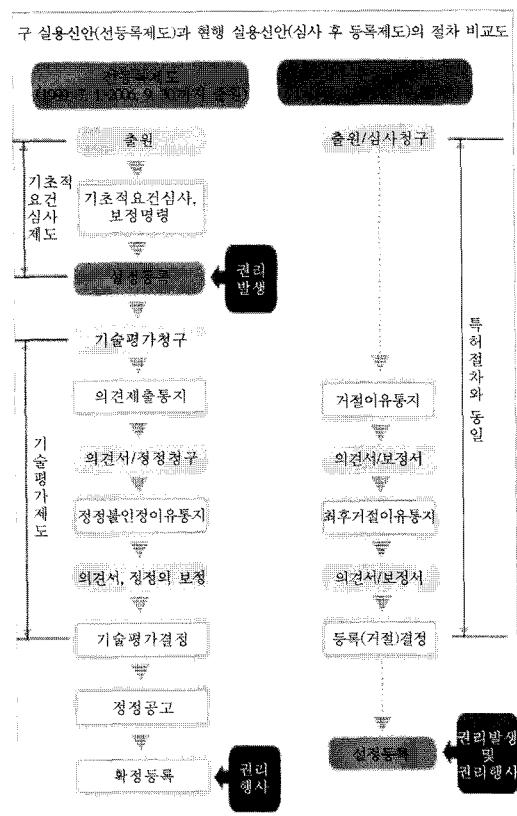
여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즉, 특허권의 보호대상이 되는 ‘발명’이란 자연법칙을 이용하여 ‘반복이 가능’하고 기술적으로 ‘실시가능성’이 있는 ‘진보성’이 있는 구체적인 아이디어를 보호하는 것이다. 반면, 실용신안권의 보호대상이 되는 ‘고안’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사상의 창작’이라고 정의되어 있는데 실용신안법의 역할은 진보성의 판단이 어려운 기술이외의 분야에서 발생하는 아이디어의 보호를 위한 제도이다(신재호, 2004). 그러나 실제로 발명인지 실용신안인지 는 출원인의 주관적인 판단에 의하며 특히 실용신안제도가 기존 형식적인 요건만을 심사하여 등록하던 선등록제도에서 실체심사 후 등록여부를 결정하는 심사 후 등록제도로 변경된 2006년 10월 1일 이후에는 더욱 그런 추세를 보인다. 실용신안 제도가 선등록제로 였던 이유는 제품의 라이프사이클이 점차 단축되어 그 제조 기술을 조기에 보호하여야 하므로 심사 기



<그림 1> 국내 특허권 출원과정
자료출처: 특허청 (2010b), www.kipo.go.kr

간을 단축하고자 함이었다. 따라서 실용신안은 등록이 빠르고 단순하여 중소기업의 경쟁력 위치를 강화 할 수 있어 중소기업에 유리한 제도로 평가되어 왔다 (구대환, 2005).

특허와 실용신안권은 출원인이 창작의 내용과 구체적인 물품의 적용을 제시하여야 하는 데 구체적인 국제특허분류는 ‘섹션, 클래스, 서브클래스 및 메인그룹, 또는 서브그룹의 계층구조로 이루어져 있다. 의류제품은 현재 국제특허분류(IPC: International Patent Classification) 제9판의 ‘section A’의 ‘class 41’에 분류되어 있고 ‘subclass B, C, D, F, G, H’로 세부 분류되며 발명물품의 내용에 따라 메인그룹과 서브그룹이 ‘7/00’식으로 표현된다. 현재 특허청 심사제도는 심사의 일관성과 전문성을 제고하고 업무처리속도를 향상시키기 위해 심사파트제를 운영하고 있는데 의류는 ‘화학생명(8과)’ 심사국 산하, ‘섬유생활용품’ 심사과의



<그림 2> 국내 실용신안권 출원과정
자료출처: 특허청, (2010b), www.kipo.go.kr.

‘생활용품’ 심사파트에 속하고 있다. 심사 및 등록과정은 <그림 1>~<그림 2>와 같은데 실용신안 제도가 심사 후 등록제도로 변경된 2006년 10월 1일 이후에는 특허와 거의 같은 절차를 거칠을 알 수 있다.

III. 연구방법

연구자료는 2010년 8월 1일 현재 등록유효한 특허와 실용신안을 대상으로 하여 특허청 특허정보검색서비스인 KIPRIS를 이용, 의류와 관련 있는 품목인 국제상품분류코드(IPC 제9판) 중 생활필수품인 섹션A의 class41(의류)의 특허, 실용신안권으로 하였다. 연구 대상기간으로는 1996년 이전 의복류의 특허, 실용신안 출원이 상대적으로 미비하였고 특히 1991년부터 1995년까지 의류와 직접 관련 있는 A41B와 A41D에 단 2건이 등록되어 거의 중지되었던 시기였으므로 <표 1>, 의류의 특허와 실용신안이 본격적이며 지속적으로 등록되기 시작한 1996년 1월 1일부터 2009년 12월 31일 기간 동안 등록된 출원 건으로 제한하였다.

자료분석은 IPC A41B~H의 연도별 등록추세를 분석하고 의류의 세부 품목인 A41B(셔츠; 속옷; 유아용 린넨제품; 손수건)와 A41D(겉옷; 보호복; 부속품)의 등록사항을 발명내용의 제공혜택 유형 면에서는 안전/보호, 기능성, 건강으로, 개발방법 유형 면에서는 디자인, 소재/재료, 공정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출원인 특성을 기업과 개인, 내국인과 외국인 기준으로 분석하였다. 부가적으로 의복류 최초의 특허와 실용신안 출원사례를 수집하였고 최근 증가하고 있는 대학교의 특허, 실용신안 사례도 분석하였다.

<표 1> 1996년 이전과 이후의 의복류 IPC A41B와 A41D의 특허와 실용신안 등록건수

IPC분류	A41B			A41D			
	연도	특허	실용신안	계	특허	실용신안	계
'53~'60	1	10	11
'61~'65	.	3(0.8)	3	.	.	11	11
'66~'70	1	17	18	1	23	24	24
'71~'75	.	20	20	2	24	26	26
'76~'80	1	9	10	3	13	16	16
'81~'85	.	16	16	1	26	27	27
'86~'90	.	2	2	.	7	7	7
'91~'95	1	1	1
'96~'09	199	291	490	487	601	1088	
계	201	358	559	495	716	1211	

IV. 연구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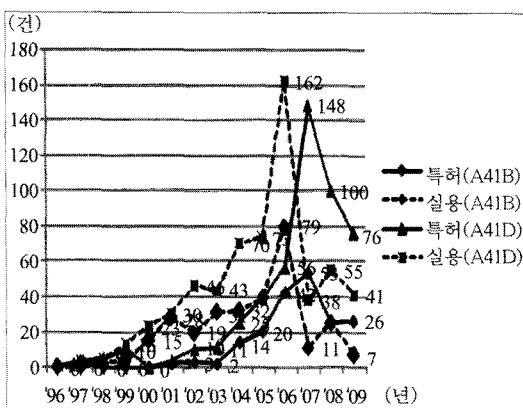
1. 의복류 및 부속품 A41의 연도별 특허와 실용신안 등록추이 분석

의복류와 부속품인 IPC분류 A41B~H에 등록유효한 특허, 실용신안 출원은 1996년부터 2009년까지 총 2,291건이고 그 등록건수는 기간 중 급격히 증가하여 1996년 단 2건이던 것이 2002년 113건, 그리고 2006년 가장 많은 448건이었다. 그 중 특허 1,015건, 실용신안 1,297건으로 누적건수는 특허의 비중이 크나 실용신안 제도가 심사 후 등록제도로 변경(2006년 9월 30일)된 이후인 2007년부터 2009년까지의 기간에는 특허가 652건, 실용신안 231건으로 특허가 74%를 차지했다(표 2). 그 이유는 등록과정이 특허와 실용신안에 차이가 없어지면서 실용신안권의 수명이 10년인데 반해 15년의 수명을 가진 특허를 택하게 된다고 할 수 있다. 의복류인 A41B와 A41D의 연도별 특허와 실용신안 등록추이를 비교하면 실용신안의 등록제도가 심사 후 등록으로 변경되기 직전인 2006년 A41B와 A41D를 합한 실용신안의 등록건수가 241건으로 특허 98건의 약 2.5배로 많으나 2007년에는 특허가 201건으로 급증해 오히려 실용신안 49건의 약 4배에 달해 현행 제도로의 변경이 큰 영향을 미침을 알 수 있다(그림 3).

A41B와 A41D의 특허와 실용신안권 중 2010년 8월 1일 현재 등록이 유효하며 발명 내용이 이미지가 제공되는 최초의 사례는 A41D의 1957년 3월 30일, 개인출원인 김이배의 ‘淸雨兩用비니루잠바’(대한민국 특허등록번호 2004-0000648, 1957)이며 A41B에는 1961년

<표 2> 의복류 및 부속품 A41의 연도별 특허와 실용신안 등록추이

IPC 분류	A41B		A41C		A41D		A41F		A41G		A41H		계
	셔츠; 속옷; 유아용 린넨제품; 손수건	코르셋; 브래지어			겉옷; 보호복; 부속품		의복의 고정구; 거는 기구		조화; 가발; 마스크(가면); 깃털		달리 분류되지 않는 의류를 만들기 위한 기구 또는 방법		
구 분	특 허	실 용	특 허	실 용	특 허	실 용	특 허	실 용	특 허	실 용	특 허	실 용	
'96	1	1	.	2
'97	3	.	.	.	3	3	3	.	12
'98	.	2	.	1	5	4	1	1	2	.	3	1	20
'99	.	3	.	3	10	13	.	.	5	.	5	2	41
'00	.	15	.	11	.	23	.	3	3	2	4	.	61
'01	2	28	1	13	3	30	.	1	1	5	.	4	88
'02	3	19	5	13	10	46	.	1	5	7	3	1	113
'03	2	31	2	29	11	43	2	3	5	11	.	.	139
'04	14	32	5	18	25	70	1	3	11	11	1	.	205
'05	20	39	10	25	39	73	1	13	7	24	6	2	279
'06	42	79	15	31	56	162	7	4	23	16	11	2	448
'07	53	11	29	1	148	38	10	6	57	8	19	.	380
'08	25	25	9	9	100	55	6	4	27	7	7	1	275
'09	26	7	13	4	76	41	7	5	23	6	17	2	228
계	190	291	89	158	487	601	35	44	169	97	80	15	2291



<그림 3> A41B와 A41D의 특허실용신안 등록추이

3월 9일 등록한 박종술의 ‘襟및袖를自由로갈수있는와 이샤쓰’(대한민국 특허등록번호 20-0000348, 1958)이다(표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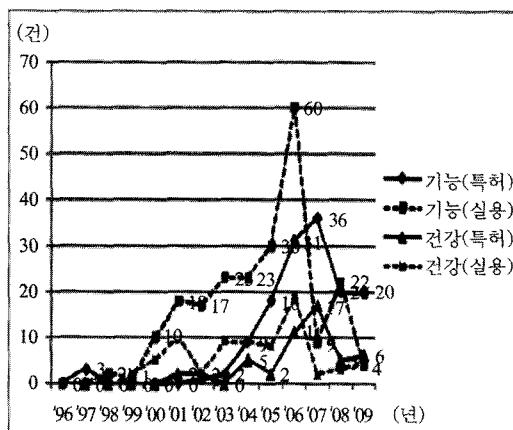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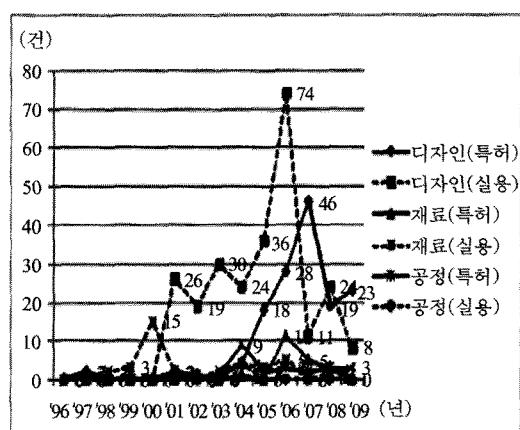
2. A41B와 A41D의 연도별 특허와 실용신안 등록 내용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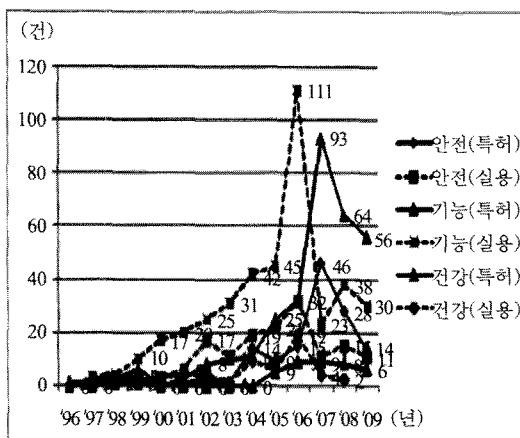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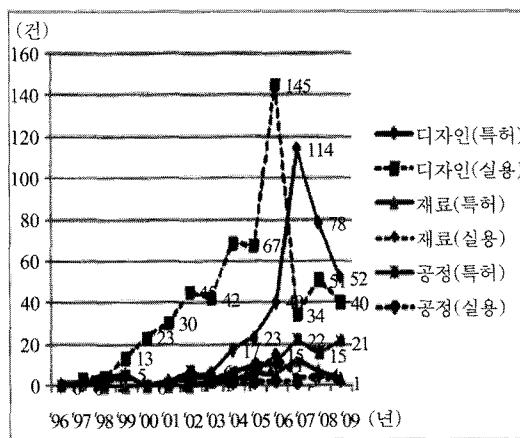
A41B와 A41D의 발명내용을 제공하는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 A41B(셔츠; 속옷; 유아용 린넨(LINEN) 제품; 손수건)에는 규정된 품목의 특성상 새로운 기능성 부여를 위한 출원이 387건으로 전체의 75%를 차지하였고 1건을 제외한 나머지는 건강을 위한 것이었다. 또 개발방법 면에서도 디자인 개발에 의한 것이 83%, 재료개발에 의한 것이 11.2%, 그리고 나머지 5.8%는 제조공정 및 방법에 의한 것이었다(그림 4)-(그림 5).

A41D의 경우는 A41B와는 달리 규정된 품목이 ‘겉옷; 보호복; 부속품’으로 되어 있어 보호/안전의 혜택을 부여하는 발명이 26.3%로 큰 비중을 차지하였고 반면 건강을 위한 발명은 8.3%에 불과하였다. 개발방법에 있어서도 제조공정이나 방법이 10%를 차지했고 재료나 원단 개발에 의한 것이 6.4%를 차지하여 A41B의 경우 디자인 개발이 대부분을 차지했던 사례와 비교하면 다양한 방법에 의한 창작이 이루어짐을 알 수 있다(그림 6)-(그림 7). A41B와 A41D의 등록내용을 제공하는 기준으로 분석한 사례를 <표 4>-<표 5>에 제시하였다.

<표 3> 의복류(IPC A41B와 A41D)의 국내 최초 등록사례

IPC	사 항	특 허	설용신안
A41B	IPC분류	A41B 7/00	A41B 3/14
	등록번호	10-0002685	20-0000461
	출원인	이근범	박종술
	등록일자	1968. 7. 23	1958. 5. 30
	명 칭	칼라카포스의제조방법	襟 및 袖를 자유로 갈 수 있는 와이셔츠
A41D	발명내용		
	IPC분류	A41D 27/00	A41D 1/02
	등록번호	10-0001855	20-0000341
	출원인	이운일	김이배
	등록일자	1966. 4. 21	1957. 3. 30
	명 칭	경사(傾斜) 조직으로 된 의류용 「밴드」의 제조방법	淸雨兩用비니루잠바
	발명내용		

<그림 4> A41B의 특허, 실용신안 내용분석
(제공혜택기준)<그림 5> A41D의 특허, 실용신안 내용분석
(개발방법기준)

<그림 6> A41D의 특허, 실용신안 내용분석
(제공혜택기준)<그림 7> A41D의 특허, 실용신안 내용분석
(개발방법기준)

<표 4> A41B와 A41D의 제공혜택 유형별 특허, 실용신안 출원사례 예

구 분	A41B		A41D	
	특 허	실용신안	특 허	실용신안
안 전	없 음	없 음	주식회사 파이로: 경량화된 고열용 방열복	(주)다산종합엔지니어링: 방검 및 내화용 안전장갑
기 능	콤비 가부시키가이사: 유아용 의복(CHILD CLOTH)	신영스타킹 주식회사: 풋페드	에스케이 네트웍스 주식회사: 보조체결수단이 구비된 여성 용 상의	코오롱 글로텍 주식회사: 탈부착가능한 다용도 멀티모 켓, 공기주머니 및 에어백이 장 착된 폴리플리스/폴리에스테 르 메쉬 의류
건 강	가부시키가이사 와코르 홀딩스: 하지부 보호의료	주식회사 태진텍스타일: 헬을 자극하는 양말	쓰리엠 컴퍼니: 착용감이 좋은 내부 커버 웨 브를 포함하는 호흡용 마스크	(주)이노비즈: 저주파 치료기를 구비한 의복

<표 5> A41B와 A41D의 개발방법별 특허, 실용신안 출원사례 예

구 분	A41B		A41D	
	특 허	실용신안	특 허	실용신안
디자인	송악코리아 주식회사: 남성용 거들	윤철: 가슴 보장페드가 구비된 남성용 상의	제우스 에스. 빠. 아.: 통풍성 의류제품	아이비클럽: 수단에 의해 개폐되는 특수 주머니를 갖는 스커트
재료	구창모: 근골격계 질환의 진통해소용 조성물 및 그를 이용하여 제조된 기능성 양말	정근호: 자석을 이용한 건강 와이셔츠	원광대학교 산한협력단: 충전용 발전기를 갖춘 보온용 의복	정민식: 광섬유 발광수단을 갖는 발광장치가 결합된 소방기동복
공정	김창호: 동사양말 제조방법	유니참 가부시키카이샤: 1회용 팬츠의 제조방법	아르테인터내셔널: 의복의 이으매 처리방법	오경선: 방수용 장갑의 중간피 봉접구조

3. A41B와 A41D의 연도별 특허와 실용신안 등록 품목분석

A41B와 A41D의 연도별 등록품목을 비교하여 보면 우선 A41B는 IPC분류 설명에 ‘셔츠; 속옷; 유아용 린넨제품; 손수건’이라 되어 있으나 속옷류 전체가 39%로 가장 많았고 그중 남성속옷이 88건으로 전체의 18.3%를 차지하는 데 비해 여성속옷은 34건으로 7%에 불과했다. 단일 품목으로는 특허와 실용신안 총 481건 중 양말, 덧신이 135건으로 28%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유아용이 57건을 차지했다(표 6). 속옷류의 출원이 많은 것은 소수 기업의 시장점유율이 큰 속옷시장의 경우, 최근 패션트렌드에 맞추어 기능성 속옷의 요구가 커짐에 따라 특허나 실용신안 등록

으로 차별화된 제품의 경쟁력을 유지하려는 시도를 발견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주)신영와코루가 50건, (주)남영비비안이 13건을 등록하여 2003년 이후 비슷한 시기, 유사한 기능의 제품에 특허와 실용신안 등록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 남성하의 속옷(팬티) 등록이 많은 것은 남성의 경우 속옷이 건강, 기능 등을 도울 수 있는 도구로 사용될 수 있음을 의도한다고 할 수 있다. 양말류의 출원이 많은 것은 소비자의 라이프스타일이 스포츠, 등산 등으로 옥외활동이 다양해짐에 따라 충격완화, 보호 등의 기능성을 요구함을 반영한다고 할 수 있다.

A41D인 ‘겉옷; 보호복; 부속품; 땀복’에 있어서는 일반적인 의류 외에 장갑의 등록비중이 약 20%로 가장 높고 특히 다른 품목에 비해 장갑에는 특허 비중

<표 6> A41B의 연도별 특허와 실용신안의 등록품목분석

품목	연도	'07	'08	'09	'00	'01	'02	'03	'04	'05	'06	'07	'08	'09	소계	계
양말, 덧신	특허	•	•	•	•	1	1	•	5	3	17	12	7	4	50	135
	실용	•	•	•	2	5	4	5	13	19	30	2	13	1	85	
남성 팬티	특허	•	•	•	•	•	1	1	4	2	5	6	6	2	27	71
	실용	•	•	3	7	9	1	6	3	4	8	1	2	•	44	
남성속옷 상의	특허	•	•	•	•	•	•	•	1	•	•	•	•	•	1	9
	실용	•	•	•	•	4	2	•	•	•	1	•	1	•	8	
남성속옷 일반	특허	•	•	•	•	•	•	•	•	•	•	•	•	2	2	8
	실용	•	•	•	2	1	•	•	1	•	•	•	2	•	6	
여성 팬티	특허	•	•	•	•	•	•	•	•	1	1	4	1	1	8	20
	실용	•	•	•	•	2	3	•	•	2	4	1	•	•	12	
여성속옷 상의	특허	•	•	•	•	•	•	•	•	1	•	•	•	1	2	6
	실용	•	•	•	•	•	•	•	•	2	1	•	•	1	4	
여성속옷 일반	특허	•	•	•	•	•	•	•	•	1	1	2	•	•	4	8
	실용	•	•	•	•	1	•	2	1	•	•	•	•	•	4	
팬티 (일반)	특허	•	•	•	•	•	•	•	1	4	3	6	4	2	20	42
	실용	•	1	•	•	•	•	4	•	8	6	•	•	3	22	
속옷 (일반)	특허	•	•	•	•	•	•	•	1	•	3	4	1	1	10	25
	실용	•	•	•	•	1	•	2	2	1	5	2	1	1	15	
일회용 팬티	특허	3	•	•	•	•	•	1	1	•	5	8	•	1	19	25
	실용	•	•	•	1	1	1	•	1	2	•	•	•	•	6	
유아용	특허	•	•	•	•	•	•	•	•	4	•	4	4	5	17	57
	실용	•	•	•	1	1	2	8	7	3	12	3	2	1	40	
셔츠 등 의류	특허	•	•	•	•	•	1	•	•	1	3	4	1	2	12	25
	실용	•	•	•	1	1	1	•	2	4	3	•	1	•	13	
스타킹	특허	•	•	•	•	1	•	•	•	1	•	1	•	2	5	23
	실용	•	•	•	•	2	3	5	2	1	4	1	•	•	18	
부분	특허	•	•	•	•	•	•	•	1	2	3	2	1	2	11	19
	실용	•	1	•	1	•	1	•	•	1	4	•	•	•	8	
손수건	특허	•	•	•	•	•	•	•	•	•	1	•	1	1	3	8
	실용	•	•	•	1	•	•	•	•	1	1	•	2	•	5	

이 높아 특허와 실용신안 비중이 거의 비슷하게 등록되었는데 그 이유는 안전과 보호의 기능을 부여하여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품목임을 반영한다고 할 수 있다(표 7). 의복의 부분출원의 비중도 17%를 차지하는데 이는 의복 전체가 아니라 주머니, 트임, 여밈장치, 칼라, 소매단 등의 디테일로서 제품의 차별화를 시도하려는 전략을 볼 수 있으며 이를 위해 경쟁사로부터 배타적 권리를 확보하고자 함을 알 수 있다. 특히 제품의 디자인이 학교에 의해 정해지므로 경쟁사와의 제품차별화가 매우 힘든 교복의 경우 제품의 디테일(예:

주머니 잡금장치, 앞판의 시크릿, 겨드랑이 매쉬 등)에 의한 차별화시키려고 하는 노력을 볼 수 있다. 교복 3사 중 아이비클럽이 총 등록 11건, 엘리트베이직이 7건 등록과 14건 공개, 에스케이(스마트)가 3건 등록, 2건 공개건수가 기록되어 있고 후발 주자인 스쿨룩스는 2009년까지 1건 등록, 2010년 3건 등록, 그리고 현재 3건이 공개 중이어서 2006년 이후 교복시장에서의 특허와 실용신안으로 경쟁력을 확보하려는 전략을 엿볼 수 있다. 또 재킷, 방한복 등의 상의의 비중도 큰데 이는 소비자들의 라이프스타일이 다양해짐에 따라 옥외

<표 7> A41D의 연도별 특허와 실용신안 등록품목분석

품목	연도	'96	'97	'98	'99	'00	'01	'02	'03	'04	'05	'06	'07	'08	'09	소계	계
의복	특허	.	.	3	3	.	1	4	1	4	13	13	38	26	26	132	262
	실용	.	1	.	1	6	6	12	12	15	15	28	9	13	12	130	
장갑	특허	1	2	.	.	.	1	2	1	9	10	15	39	16	9	105	214
	실용	.	.	1	3	6	5	10	4	9	18	32	13	6	2	109	
상의	특허	.	.	.	1	.	.	1	2	4	3	10	27	17	21	86	188
	실용	.	1	1	6	3	1	8	5	12	11	34	3	10	7	102	
부분	특허	.	.	1	1	4	7	8	17	17	9	64	184
	실용	.	1	.	.	2	3	4	12	18	17	38	3	13	9	120	
바지	특허	.	.	1	2	.	.	1	1	.	4	4	11	10	2	36	88
	실용	.	.	1	.	1	5	3	3	8	1	15	4	7	4	52	
넥타이	특허	.	.	.	2	.	1	1	.	1	.	3	6	3	3	20	75
	실용	.	.	1	3	5	9	7	5	5	5	10	1	3	1	55	
유아용	특허	1	.	1	.	3	7	1	13	30
	실용	1	2	3	6	2	1	1	1	17	
원단	특허	.	1	.	2	.	.	.	3	2	.	2	4	4	3	21	24
	실용	1	1	1	.	3	
스커트	특허	1	2	.	2	5	14
	실용	4	1	4	9	
속옷	특허	1	1	1	.	.	3	5
	실용	2	.	.	.	2	
양말	특허	1	1	3
	실용	1	.	.	1	2	

활동이 많아지고 아웃도어나 스포츠웨어시장이 커짐에 따라 이러한 제품에서의 기능성을 제공하여 차별화하고자 함을 알 수 있다.

권의 법적 보호장치를 마련해 둔 것으로 분석된다.

5. 대학교의 특허·실용신안 출원

최근 증가하는 현상 중의 하나가 대학교의 패션제품 관련 특허 및 실용신안 출원이므로 이에 대한 추세를 분석하였다. 특허청에 '대학교'를 출원인으로 하여 신청된 건수는 특허 46건, 실용신안 11건으로 총 57건이나 대학교가 기업을 겸하고 있는 사례를 제외하면 15개 대학에서 총 47건이 의복류(A41B와 A41D)에 출원을 신청한 것으로 분석되었다(표 9). 모든 대학교가 '산학협력단'을 출원인으로 하여 신청하였고 가장 많은 출원을 한 대학교는 포항대학교로 총 10건을 출원하였는데 그 중 8건이 비행장갑, 1건이 방염복, 그리고 1건이 '장갑의 세부차수 결정방법'에 관한 것이다. 다음으로 서울대학교가 9건, 그리고 연세대학교와 이화여자대학교가 각 8건과 6건을 스마트의류에 관한 출원을 하였다. 그 외 11개 대학이 1~3건의 출원을 신청하였는데 현재 각 대학이 정부나 산하단체의

4. A41B와 A41D의 출원인 특성 비교분석

출원인의 특성을 기업과 개인, 내국인과 외국인으로 분류하여 분석한 결과는 <표 8>과 같다. A41B의 경우 특허의 기업출원 비중이 34%인데 반해 실용신안의 기업출원은 19%로 개인의 실용신안 출원비중이 높았다. A41D의 경우는 특허출원의 38%, 실용신안 출원의 49%가 기업출원이어서 A41B의 품목에 비해 기업의 실제 제품화가 더 많이 이루어지는 품목임을 알 수 있다. 출원인의 국적을 비교하여 보면 A41B 특허 출원의 18.5%, 실용신안의 2.4%가 외국국적인 출원이었고, A41D의 경우는 특허출원의 13.5%, 실용신안의 23%가 외국인 출원이었다. 특히 외국기업의 출원이 2006년 급증한 것은 한국유통시장이 완전 개방화된 시기와 일치하므로 국내 진출을 앞두고 미리 지적재산

<표 8> A41B와 A41D 출원인 특성 비교분석 IPC

구 分	A41B												A41D												
	특 허						실 용						특 허						실 용						
	기 업		개 인		기 업		개 인		기 업		개 인		기 업		개 인		기 업		개 인		기 업		개 인		
국적 연도	국내	외국	국내	외국	소계	국내	외국	국내	외국	소계	국내	외국	국내	외국	국내	외국	국내	외국	국내	외국	국내	외국	국내	외국	소계
'96	1	.	1	
'97	.	2	1	.	3	1	.	2	.	3	2	.	1	.	3	
'98	2	2	.	4	.	1	5	2	.	2	.	4	
'99	3	.	3	5	3	2	.	10	8	.	5	.	13	
'00	5	.	10	.	15	11	.	12	.	23	
'01	.	1	1	.	2	3	.	25	.	28	1	.	2	.	3	13	.	17	.	30	
'02	.	1	2	.	3	6	.	13	.	19	7	1	2	.	10	11	.	35	.	46	
'03	.	1	1	.	2	6	.	25	.	31	1	4	5	1	11	14	1	28	.	43	
'04	4	3	7	.	14	6	.	26	.	32	5	5	15	.	25	9	.	61	.	70	
'05	7	1	19	1	20	6	3	30	.	39	13	5	20	1	39	13	2	58	.	73	
'06	10	12	19	1	42	12	1	66	.	79	17	7	32	.	56	34	127	.	1	162	
'07	9	7	36	1	53	2	1	8	.	11	31	21	95	1	148	11	.	27	.	38	
'08	2	1	21	1	25	5	.	20	.	25	29	6	64	1	100	13	1	40	1	55	
'09	3	3	20	0	26	1	.	6	.	7	25	4	45	2	76	12	.	29	.	41	
계	35	32	127	4	190	52	5	232	2	291	135	60	285	7	487	153	131	315	2	601	

연구비 지원으로 각종 IT나 기술을 접목시키는 의류나 소재 개발 프로젝트를 진행 중인 점을 고려할 때 앞으로 대학교의 특허·실용신안의 출원을 증가할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V. 결론 및 제언

국내 폐선기업의 특허 및 실용신안 등록현황을 분석한 연구결과 폐선기업은 제품의 차별화와 경쟁력 유지를 위해 특허 및 실용신안에 대한 권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어 지난 14년 동안 지속적으로 출원이 증가하였고 특히 실용신안 제도가 심사 후 등록으로 변경된 2006년 10월 이후에는 특허의 출원이 실용신안보다 크게 증가하였다. IPC 분류 A41B~H의 전체 품목별 비중을 비교하여 보면 A41D에 전체 등록건수 2,255건의 48%인 1,088건이 등록되었고, A41B에 20%가 등록되어 두 품목이 전체의 68%를 차지했다. 특허와 실용신안을 비교하여 보면 등록절차 및 심사 기준이 덜 까다로운 실용신안에 54.3%가 등록되어 있으나, A41G(조화, 가발)와 A41H(달리 분류되지 않는 의류제작기구)에는 특허등록이 실용신안에 비해 월등히 많았다. 연도별로 비교하여 보면 1996년 단 2건이

던 것이 2001년 88건, 그리고 2006년에는 448건으로 가장 많은 건수를 기록했으나 그 후 감소하여 2009년 228건이 등록되었다. 발명내용을 제품의 제공혜택과 개발방법을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 A41B(속옷류)에서는 건강과 기능의 혜택이 제품의 디자인 개발에 의해 구현되었고 A41D(겉옷류)의 경우 보호/안전과 새로운 기능 제공혜택이 재료 및 제조공정에 의한 방법으로 개발되는 경향을 보였다. 출원인 특성을 분석하여 보면 A41B의 경우 기업출원의 비중이 특허의 36%, 실용신안의 19%이고 외국인의 출원비중은 특허의 19%, 실용신안에는 단 2%를 차지했다. A41D에는 기업출원이 특허의 38%, 실용신안의 49%를 차지했고 외국인에 의한 등록은 A41B와 달리 특허의 14%, 실용신안의 23%를 차지해 실용신안의 비중이 더 커졌다. 품목별 분석에 있어 A41B에는 속옷 특허, 남성속옷의 비중이 커졌고 2004년 이후 가능성 양말, 특히 키높이 양말이나 스포츠용도의 양말 등의 출원이 많았다. 또 경쟁사(예를 들면 신영와코루와 비비안)가 비슷한 시기에 유사한 제품에 등록하여 특허나 실용신안권을 확보하여 제품의 차별화를 주고 경쟁사를 견제하는 현상을 발견할 수 있었다. A41D에는 장갑, 상의 등의 보호 기능성 의류가 많았고 A41B와 같이 경쟁업체(예를 들

<표 9> 대학교의 특허·실용신안 출원현황

대학교명	출원건수	발명의 명칭	IPC분류	최초 출원일자
포항공과대학교 산학협력단	10(등록)	장갑의 세부치수 결정방법 등	A41D 19/02 등	2007. 9. 7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9(등록3, 거절1, 공개4)	전자 열전모듈에 의한 지능형 항온의복, 뮤직체킷 등	A41D 13/00 등	2004. 12. 30
연세대학교 산학협력단	8(등록7, 공개1)	형상기억합금을 이용한 가변 보온장치 및 이를 적용한 보온용 제품 등 스마트의류	A41D 13/005 등	2006. 10. 12
이화여자대학교 산학협력단	6(등록)	바 패턴 사이에 형성된 에어터널을 구비한 스마트웨어	A41D 13/005 등	2009. 7. 29
경북대학교 산학협력단	3(공개2, 등록1)	재킷, 비행복	A41D 3/00 등	2008. 5. 30
인천대학교 산학협력단	2(공개1, 거절1)	낙뢰방지 우의	A41D 13/008 등	2008. 8. 29
건국대학교 산학협력단	2(공개)	동물실용 무균작업복 등	A41D 13/02 등	2008. 10. 10
계명대학교 산학협력단	1(등록)	전국내장형 의복	A41D 13/00 등	2006. 8. 21
부경대학교 산학협력단	1(등록)	차양 및 통풍기능을 갖는 의복소재 및 상기소재로 제작된 옥외 작업복	A41D 31/02 등	2009. 11. 9
부산대학교 산학협력단	1(등록)	안마장치가 내장된 기능성 의류	A41D 13/00 등	2007. 10. 22
원광대학교 산학협력단	1(등록)	충전용 발전기를 갖춘 보온용 의복	A41D 13/005 등	2007. 1. 30
전북대학교 산학협력단	1(등록)	골절방지 의복	A41D 13/06 등	2007. 5. 21
한경대학교 산학협력단	1(등록)	탈부착 가능 피켓 겸용 포켓	A41D 11/00 등	2007. 1. 4
숙명여자대학교 산학협력단	1(공개)	기능성 의류제품	A41D 13/00 등	2009. 10. 16
인제대학교 산학협력단	1(거절)	유아용 안전침구	A41B 13/08 등	2007. 12. 31
계		등록건수 31, 공개건수 11, 거절건수 2, 총 44건		

면 교복 3사인 스마트교복, 아이비클럽, 엘리트교복와 스쿨룩스)가 거의 같은 시기에, 의류의 디테일에 등록하는 현상을 보여 기업이 경쟁전략수립에 특허와 실용신안 등록이 이용됨을 알 수 있었다. 2004년 이후 대학교 산학협력단의 출원이 급증하였는데 총 15개 대학에서 57건을 등록하였고 발명내용은 IT연관된 스마트의류나 하이텍에 의한 보호복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이러한 현상은 대학의 산학협동 과제 수행의 기회가 증가함에 따라 더 두드러질 것이라 판단된다.

연구결과의 제언으로 우선 특허와 실용신안권은 중소기업 및 영세기업이 대기업에 대응해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기회로 인식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결과에서 밝힌 바와 같이 A41B와 A41D의 특허 개인출원비중이 각각 66%와 62%이고 실용신안의 개인출원비중이 81%와 51%인데

이들의 일부는 단순한 개인이 아니라 중소, 영세업체의 대표도 포함한다고 추측할 수 있다. 다른 산업에 비해 기업규모가 작은 업체가 대부분을 차지하는 국내 패션산업은 아직도 제조 또는 제품 위주의 경영전략을 전개하는 경향이 있어 제품이나 디자인 개발은 적극적이나 이에 대한 권리 확보에 소극적이어 대기업이나 외국기업에 의해 자사의 아이디어나 디자인을 도용당할 수도 있다. 일반적으로 특허나 실용신안은 중소기업이 국내외 대기업에 대하여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경영전략의 일부로 제시되고 있는데(장태종, 2009) 중소업체가 대부분을 차지하는 패션산업의 특성상 시사하는 점이 크다고 할 수 있다. 또한 패션제품은 각 부분의 조합이라고도 할 수 있는 데 제품의 차별화가 제품 모든 구성요소에 의한 것도 있으나 제품의 부분적 요소에 의해 가능한 경우가 대부분인데 연구결과

의복의 부분에 의한 특허·실용신안 출원이 17.2%를 차지하고 있고 이는 증가추세에 있으므로 패션중소업체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발명에 대한 권리를 보호하고자 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점차 패션산업환경은 새로운 아이디어와 창의적인 제품 개발, 그리고 이를 브랜드차별화로 이끌 수 있는 마케팅력이 중요해질 것이다. 그러므로 패션제품 개발에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개발하는 많은 개인 또는 영세업체의 특허나 실용신안권이 이를 마케팅력으로 브랜드가치를 높일 수 있는 중견기업과의 협력체계로 제품으로 개발되어 상생하는 전략도 바람직할 것이다.

또한 국내 패션시장은 이미 한·EU FTA협정이 체결되어 2011년 시행될 것이고 한미 FTA도 곧 시행될 것이다. 그 외 나머지 국가들, 예를 들면 일본, 중국과도 적극적으로 FTA협상이 진행 중이어서 급속도로 개방화추세에 있는데 연구결과에서 밝혔듯이 2006년 유통시장개방을 앞두고 특허·실용신안이 급격히 증가한 사례를 고려할 때 현재 외국기업 또는 외국인에 의한 국내 출원이 특허 평균 16%, 실용신안 12.7%이나 앞으로 더 많은 외국기업들이 국내 진출에 앞서 특허와 실용신안에 대한 배타적 권리의 확보에 적극적일 것이다. 그러므로 국내 기업은 이미 개발한 발명에 대하여 적극적인 출원으로 법적인 권리의 보호장치가 필요할 것이다. 또한 국내 패션기업도 FTA체결로 해외진출의 장애가 감소되므로 이러한 기회를 고려할 때 이미 국내 출원한 발명에 대하여 국제출원을 적극 검토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패션기업을 대상으로 실제적인 국내의 출원을 위한 등록절차 및 법적 권리에 대한 교육프로그램 개발하는 것도 필요할 것이다. 현재 KIPRIS를 통한 국내외 지적재산권 검색이 매우 용이하게 되어 있고 모든 권리는 ‘선출원 원칙’에 근거하므로 자사제품과 관련된 기존 권리에 대한 정보 검색을 우선 거친 후 제품 개발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인식을 고취시킬 필요가 있을 것이다.

연구의 한계점으로 연구대상품목을 IPC A41B와 A41D로 제한하였으나 패션기업의 품목에는 신발류나 잡화류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으므로 패션기업 전체를 분석하였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또한 자료대상을 1996년 이후의 등록사례로 제한하였으나 등록 건수는 많지 않으나 그 이전시기를 포함하여 분석하면 모든 시기의 등록변화추이를 파악할 수 있었을 것이다. 후속연구로는 의복류에 출원된 특허나 실용신안권이 실제 제품화되어 국내외 패션시장에 소개된 사

례를 분석하면 법적 제도의 효율성을 평가할 수 있을 것이고 실제 패션기업이 채택할 수 있는 제도로의 개선방향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가짜 유명 상품 밀수 여전히 극성: 밀수품목의 다양화·고급화 두드려져. (2003, 4. 4). 특허청. 자료검색일 2003, 4. 6, 자료출처 <http://www.customs.go.kr>
- 구대환. (2005). 실용신안 제도에 의한 소발명의 효과적인보호방안. *서울대학교 법학*, 46(4), 249-276.
- 권인희. (2009). FTA와 지적재산권. *한양법학*, 20(1), 3-18.
- 김용주. (2001). 한국패션기업의 지적재산권 보호실태에 관한 연구. *한국의상디자인학회지*, 3(2), 5-21.
- 김용주. (2003). 폴로/랄프로렌 도형상표의 유사상표 등록에 관한 연구. *한국의상디자인학회지*, 5(3), 63-77.
- 김용주. (2004a). 국내 패션기업의 위조상품 관리실태 및 대응전략분석. *대한가정학회지*, 42(1), 53-67.
- 김용주. (2004b). 한국의류산업의 의상(디자인) 등록추세와 의장제도에 관한 연구-의복류(의장분류 B1)의 의장 등록을 중심으로-. *복식*, 54(1), 125-139.
- 김용주. (2006). 해외시장에서의 한국패션상표 등록에 관한 연구-중국시장의 사례를 중심으로-. *복식*, 56(6), 153-167.
- 김이배. (1957). 清雨兩用비니루잠바, 대한민국 특허등록번호 20-0000648. 대전: 특허청.
- 박종술. (1958). 襪및袖를自由로갈수있는와이아쓰, 대한민국특허등록번호 20-0000348. 대전: 특허청.
- 신계우. (2009). 디지털 시대의 창조적 디자인과 지적재산권에 관한 연구. *한국기초조형연구*, 10(1), 279-288.
- 신재호. (2004). 특허·실용신안 제도의 위상에 대한 재검토-제도의 효율성 측면에서의 접근-. *산업재산권*, 16, 83-115.
- ‘싱가포르 악어’, ‘프랑스 악어’에 올다. (2010, 4. 22). 조선일보, p. B3.
- 장태종. (2009). 중소기업 지적재산권 활용전략. *경영법률*, 19, 1-31.
- 특허청. (2003). 주로 도용되는 국내외 상표집. 대전: 특허청.
- 특허청. (2010a). 지식재산백서 2010. 대전광역시: 특허청.
- 특허청. (2010b). 특허·실용신안의 이해. 특허청. 자료검색일 2010, 8. 1, 자료출처 www.kipo.go.kr
- Grossman, G., & Shapiro, C. (1988). Foreign counterfeiting of status goods.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103(1), 79-100.
- Kim, Y. J. (2005). The study on the registration of analogous trademarks of sportswear-focused on the judgement of trademark related lawsuits. *2005 Seoul International Clothing & Textiles Conference, Korea*, 368-371.